#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283

발의연월일: 2024. 9. 25.

발 의 자:이수진·송옥주·서미화

민병덕 · 최기상 · 김태년

한창민 • 이기헌 • 김동아

김현정 · 장철민 · 정성호

의원(12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또는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 단체의 장이 의료기관 중에서 감염병환자등을 수용할 수 있는 감염병 관리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정된 감염병관리기관이 감염병 관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데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며, 감염 병관리기관의 지정 또는 격리소 등의 설치·운영으로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이 감염병환자등을 수용하는 경우, 전염에 대한 우려로 인해 일반 외래환자나 입원환자의수가 줄어드는 경향이 있음. 또한, 감염병환자등의 수용이 종료된 이후에도 내방 환자 수가 회복되지 않음으로써 해당 의료기관의 의료수익이 감소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음.

이에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이 감염병환자등을 수용

한 이후 의료수익이 감소하는 경우, 일정한 기간 동안 그 의료수익 감소분을 보전해 주어 공익을 위한 업무를 수행함으로서 손실을 입는일이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0조의7 신설 등).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에 제10호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의4. 제70조의7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구청장이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한 의료기관의 의료수 익 감소분 보전에 드는 경비

제65조에 제8호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4. 제70조의7에 따라 시·도지사가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한 의료기관의 의료수익 감소분 보전에 드는 경비

제67조에 제9호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의7. 제70조의7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질병관리청장이 감염 병관리기관으로 지정한 의료기관의 의료수익 감소분 보전에 드는 경비

제70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0조의7(감염병관리기관 지정 의료기관의 의료수익 감소분 보전) ①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 장은 제36조제1항·제2항 또는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되어 감염병위기기간(감염병의 발생으로 인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에 따라 "경계"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때부터 해제되기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같다)동안 해당 감염병환자등을 수용한 의료기관의 월 의료수익액(의료외수익을 제외한 입원수익, 외래수익, 기타의료수익 등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감염병위기기간 직전 3년간의 월평균 의료수익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 그 차액을 보전해주어야 한다. 이 경우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과 건강보험 수가 변동을 반영하여 그 차액을 계상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의료수익 감소분 보전은 감염병환자등을 수용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감염병위기기간 이후 3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 는 달까지 실시한다.
- ③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 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전금액 및 보전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해당 의료기관이 감염병위기기간 동안 수용한 감염병환자등의 수, 감염병환자등을 수용한 기간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 2. 해당 의료기관이 이 법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의무를 위반 한 경우
- ④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월평균 의료수익의 산정기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1. 의료기관의 개설 직후부터 감염병환자등을 수용한 감염병위기기 간 직전까지의 기간이 3년에 미달하는 경우
- 2. 의료기관이 감염병환자등을 수용한 감염병위기기간 직후부터 다음 감염병환자등을 수용한 감염병위기기간 직전까지의 기간이 3년에 미달하는 경우
- ⑤ 의료수익의 구체적 범위, 의료수익 보전의 방법·절차 등 의료기 관의 의료수익 감소분 보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70조의7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감염병의 발생으로 인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에 따라 "경계"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어 해당 감염병환자등을 감염병관리기관에 수용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아 제64조(특별자치시 · 특별자치도 | 제64조(특별자치시 · 특별자치도 와 시・군・구가 부담할 경비) 와 시・군・구가 부담할 경비) 다음 각 호의 경비는 특별자치 시・특별자치도와 시・군・구 가 부담한다. 1. ~ 10의3. (생략) 1. ~ 10의3. (현행과 같음) <신 설> 10의4. 제70조의7에 따라 특별 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 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감 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한 의 료기관의 의료수익 감소분 보 전에 드는 경비 11. (생략) 11. (현행과 같음) 제65조(시·도가 부담할 경비) 다 제65조(시·도가 부담할 경비) -음 각 호의 경비는 시・도가 부담하다. 1. ~ 8의3. (생략) 1. ~ 8의3. (현행과 같음) <신 설> 8의4. 제70조의7에 따라 시·도 지사가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한 의료기관의 의료수익 감소분 보전에 드는 경비 9. (생략) 9. (현행과 같음) 제67조(국고 부담 경비) 다음 각 제67조(국고 부담 경비) ------호의 경비는 국가가 부담한다.

1. ~ 9의6. (생 략) <u><신 설></u>

10. (생 략) <신 설> 1. ~ 9의6. (현행과 같음)
9의7. 제70조의7에 따라 보건복
지부장관 또는 질병관리청장
이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
한 의료기관의 의료수익 감소
분 보전에 드는 경비

10. (현행과 같음)

제70조의7(감염병관리기관 지정 의료기관의 의료수익 감소분 보전) ① 보건복지부장관, 질병 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 장・군수・구청장은 제36조제1 항ㆍ제2항 또는 제37조제1항제 1호에 따라 감염병관리기관으 로 지정되어 감염병위기기간 (감염병의 발생으로 인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에 따라 "경계"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때부터 해 제되기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동안 해 당 감염병환자등을 수용한 의 료기관의 월 의료수익(의료외 수익을 제외한 입원수익, 외래 수익, 기타의료수익 등을 합산 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에서 같다)이 감염병위기기간 직전 3년간의 월평균 의료수익 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 그 차 액을 보전해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과 건강보험 수가 변동을 반영하 여 그 차액을 계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료수익 감 소분 보전은 감염병환자등을 수용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감 염병위기기간 이후 3년이 경과 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실시한 다.

- ③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 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 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보전금액 및 보전기간을 달 리 정할 수 있다.
- 1. 해당 의료기관이 감염병위기 기간 동안 수용한 감염병환자 등의 수, 감염병환자등을 수 용한 기간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 2. 해당 의료기관이 이 법 또는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의무를위반한 경우
- ④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월평균 의료수익의 산정기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1. 의료기관의 개설 직후부터 감염병환자등을 수용한 감염 병위기기간 직전까지의 기간 이 3년에 미달하는 경우
- 2. 의료기관이 감염병환자등을 수용한 감염병위기기간 직후 부터 다음 감염병환자등을 수용한 감염병위기기간 직전까지의 기간이 3년에 미달하는 경우
- ⑤ 의료수익의 구체적 범위, 의료수익 보전의 방법·절차 등의료기관의 의료수익 감소분보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